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5민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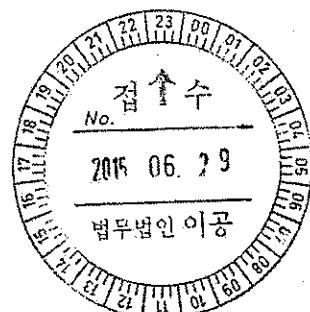
결 정

사 건 2015라757 증거보전

신청인, 상대방

1. 죄 [REDACTED]
[REDACTED]
[REDACTED]

2. 박 [REDACTED]
[REDACTED]
[REDACTED]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피신청인, 항고인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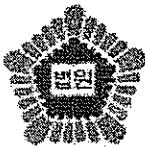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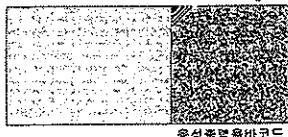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관 : 서울지방경찰청)

소송수행자 박창환, 국수호, 송광용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자 2015카기2048 결정

주 문

-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의 폐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심에서 추가된 신청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2015. 4. 18. 13:30부터 22:40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디지털파일,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기타 영상 또는 음성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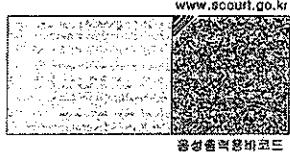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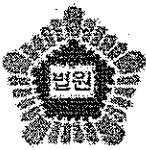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 신청취지 : 2015. 4. 18. 13:00부터 24: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CCTV(아래에서는 '이 사건 CCTV라고 한다)의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항고심에서 같은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검증목적을 제출신청이 추가됨).
- 항고취지 : 제1심 결정 중 피신청인의 폐소 부분 취소 및 그 부분 신청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신청인들은 2015. 4. 28. 피신청인(소관청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그 설치 목적과 달리 집회에 참가 중인 신청인들을 촬영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하여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증거보전신청서에는 보전대상증거로 2015. 4. 16.과 같은 달 18.의 일정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이 사건 CCTV의 영상녹화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증거보전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동영상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조사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신청인들은 2015. 4. 29.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2015. 4. 16.



증거보전신청서

자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철회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4. 30. '민사소송법 제376조, 제374조, 제344조, 민사소송규칙 제122조'를 근거규정으로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신청 중 이 사건 CCTV에 의해 2015. 4. 18. 13:30부터 22:40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디지털 파일,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기타 영상 또는 음성매체(아래에서는 '영상매체 등'이라고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고, 일부 시간대(같은 날 13:00 ~ 13:30 및 22:40 ~ 24:00)에 관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2015. 5. 8. 즉 시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 5. 11. 제1심 결정의 결정이유 중 '제374조, 제344조, 민사소송규칙 제122조'를 '제366조'로 고친다는 내용의 경정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한편, 신청인들은 2015. 6. 8.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과 관련한 근거규정에 대해 검증 목적물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6조를 명시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5. 6. 12. 신청인들의 서면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CCTV에 의해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매체 등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그 후 제1심 법원이 근거규정을 검증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6조로 고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경정결정이나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결정 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의해 제1심 결정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에게 증거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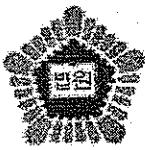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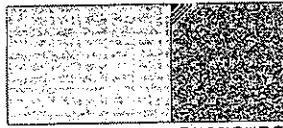


용성호석용바코드

신청서를 송달하지도 않은 채 문서제출명령을 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③ 또한 제1심 결정에서 제출을 명한 영상매체 등에 저장된 영상 등을 신청인들이 열람, 복사하여 언론에 공개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소송목적 이외의 부당한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크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

3. 제1심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증거보전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제출을 명한 영상매체 등은 그 증거방법의 특성상 검증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374조,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참조), 그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은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검증에 관한 근거규정이 아니라,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374조, 제344조, 민사소송규칙 제122조'에 의하여 앞서 본 영상매체 등의 제출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1심 결정 이유 중의 근거규정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하는 경정결정(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제1심 결정 직후 이 사건 경정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해 제1심 결정이 적법해진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제1심 결정 중 신청인들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CCTV에 의해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매체 등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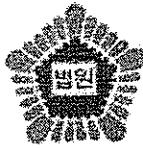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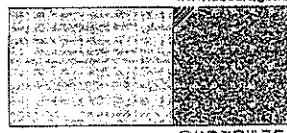
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신청인들이 추가한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판단

(1) 항고심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현저하게 소송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 항고심 결정일 이전이라면 당초의 신청취지나 신청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08조, 제262조 참조).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항고심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5. 6. 8. 이 사건 증거신청의 근거규정으로 검증목적물 제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66조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문서제출명령1)을 전제로 한 당초의 증거보전신청에다가 검증목적물 제출에 의한 증거보전신청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추가된 신청취지 또는 신청원인 역시 당초의 증거보전신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증거방법, 즉 이 사건 CCTV에 의해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매체 등의 제출을 구하고 있고, 단지 증거보전신청의 근거규정만을 새로이 추가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청취지 또는 신청원인의 추가에 의한 변경신청은 적법하므로, 이 법원은 항고심에서 제출된 주장 및 소명자료, 그리고 심문결과까지 종합하여 추가된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시 판단한다.

(2)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그런데 이 사건 CCTV에 의한 녹화 영상 등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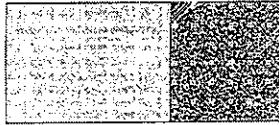


카메라 설치·운영지침(2012. 5. 23. 시행)' 제18조 제1항²⁾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이 30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저장서버의 저장용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사실상 14일(종로경찰서 저장서버) 또는 16일(남대문경찰서 저장서버)의 기간³⁾ 동안만 보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보전 대상증거는 그 짧은 보존기간 등에 비추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4조, 제366조 제1항, 제347조, 제353조,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CCTV에 의하여 2015. 4. 18. 13:30부터 22:40까지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매체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다만, 같은 날 13:00 ~ 13:30 및 22:40 ~ 24:00의 녹화 또는 녹음된 부분에 대한 검증목적물 제출신청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제1심 결정을 최초로 송달받은 2015. 5. 4.에 그 당시까지 남아 있던 남대문경찰서 저장서버(이 사건 CCTV 중 4개에 관한 저장서버)에 저장된 동영상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별도로 이를 보관하여 보존조치를 취하여 두었으므로 그 증거보전의 필요성도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종로경찰서 저장서버(이 사건 CCTV 중 5개에 관한 저장서버)에 저장되었던 동영상 등은 이미 보존기간 만료 등으로 이미 멀리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부 증거가 멀실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면 그 증거보전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증목적물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법원이 보관하여 두는 것은 그 증거방법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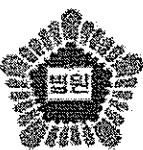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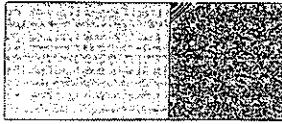
한 임의훼손이나 다른 사정에 의한 멸실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여줌으로써 이후에 있을 증거조사를 위해 그 증거방법을 유지·보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심 결정을 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의견진술권이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1심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여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원이 하는 주문과 같은 증거보전결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의한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 CCTV에 의한 영상매체 등의 검증목적물에 대하여 그 제출을 구하고 있고 이 법원의 판단 역시 그에 한정되므로, 그 영상매체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참여 보장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더욱이 신청인들이 검증목적물의 제출 취지로 증거보전 신청의 내용을 추가한 이후, 피신청인은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신청인들의 2015. 6. 8.자 서면을 송달 받았고, 같은 달 12. 이에 관한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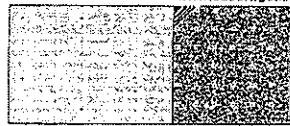
(3) 이 사건 CCTV에 의한 영상매체 등이 신청인들에 의해 소송목적 이외의 부당한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영상매체 등을 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제출된 영상매체 등을 보관하여 들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제353조 참조), 또는 당사자의 참여 아래 그에 관한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후 그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향후 진행되는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같은 법 제382조 참조). 따라서 증거보전절차에 의해 확보되는 증거방법이나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 복사의 권리나 이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송기록의 열람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62조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즉 당사자는 증거보전절차에 의해 확보된 증거방법 등에 대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일반적으로 보장되지만,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도 함께 부담한다(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4항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한 신청인들은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보된 증거방법이나 증거조사결과에 대해 향후 제기될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그 열람, 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소송목적 이외에 앞서 말한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이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앞서 본 영상매체 등을 열람, 복사하려고 한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나아가 신청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증명서번호바코드



결국 제1심 결정 중 영상매체 등에 대해 문서제출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다만, 항고심에서 추가된 검증목적물 제출에 관한 증거보전신청은 적법하고 그 증거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18.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이진관



판사

정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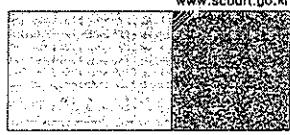
목 록

- 1)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CCTV
- 2) 광화문시민열림마당 앞 CCTV
- 3) 세종로사거리 앞 CCTV
- 4) 서울시청 앞 CCTV
- 5) 을지로입구역 CCTV
- 6) 을지로2가 사거리 CCTV
- 7) 종각역 CCTV
- 8) 서울월각사지신풍석탑 앞 CCTV
- 9) 숭례문 앞 CCTV

17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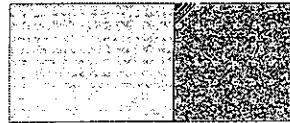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서초동, 일신빌딩)
Tel. 02-2038-3620 Fax. 02-2038-3621



증명문서용바코드

-
- 1) 신청인들이 당초의 증거보전신청서에 증거보전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이라고 기재한 이상, '(동영상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조사 포함)'이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영상매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 2)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3) 피신청인의 설명에 의하면, 각 경찰서의 저장서버가 설치된 시점이 앞서 본 CCTV 카메라 설치·운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2004년이었는데, 그 당시의 지침에 따른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저장서버의 저장용량이 설정되었고, 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예 산문제로 교체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보존기간은 위와 같이 14일 또는 16일이라고 한다.



증정증명용바코드



정본입니다.

2015.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전운성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항고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